

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	2002. 12.
제 출 자	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지역산업 발전기반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지역산업 진흥계획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사업임.
-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전자·정보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구미지역 전략산업을 주도할 재단법인 구미디지털전자·정보기술단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설립 및 운영
 - 기술단지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
 - 기술단지내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기능을 유치
 -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함
- 재원조성
 -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대학, 연구소, 기업 등의 출연재산
 - 기타 자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- 사업
 - 기술단지의 주요사업으로는 연구개발, 기술교육훈련, 인력양성, 창업보육 및 성장보육지원, 기술혁신지원사업 등

○ 업무의 위탁

-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업무는 재단에 위탁하여 수행
- 재단은 사업을 필요시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

○ 참여기관 등과의 관계

- 재단은 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출연·참여하는 기관·단체 및 법인과는 별도 협약 체결

○ 보고 및 검사 등

- 시장은 재단의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검사와 지도

○ 공무원의 파견

-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공무원 파견

○ 해산시 재산귀속

- 재단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미시 또는 구미시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인계

3. 참고사항

○ 산업발전법 제8조

○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

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구미디지털전자·정보기술단지(이하 “기술단지”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설립 및 운영) ①기술단지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으로 설립한다.

②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기술단지내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기능을 유치케 할 수 있다.

③본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제3조 (재원조성) ①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재산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
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4. 기타 자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
②시장은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및 기술단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.

제4조 (사업)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연구개발사업
2. 기술교육훈련사업
3. 인력양성사업

- 4 창업보육 및 성장보육지원사업
- 5 정보교류사업
- 6 기술혁신지원사업
- 7 시험생산사업
- 8 시설·장비 운용사업
- 9 전자·정보통신기기 등 부품소재육성사업
10.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
11. 기타 기술단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5조 (수익사업) 재단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

제6조 (업무의 위탁) ①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과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재단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필요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.

③제1·2항의 업무위탁시에는 각각 비용 등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 (참여기관 등과의 관계) 재단은 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출연·참여하는 기관·단체 및 법인과는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8조 (회계운용) 재단의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업년도는 구미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.

제9조 (재원의 사용범위) 제3조에 의거 조성된 재원은 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재단의 목적사업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.

제10조 (보고 및 검사 등) 시장은 재단의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 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12조 (해산시 재산귀속) 재단의 해산시에는 잔여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구미시에 제출하고, 잔여자산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구미시 또는 구미시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인계한다.

제13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